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동·식물인 대통령선물 관리 근거 마련 등〉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30호)

2024. 11.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동 · 식물인 대통령선물 관리 근거 마련 등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한정애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9. 4.
3. 회 부 일 : 2024. 9.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으로부터 받은 선물로서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선물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선물로 규정하고 있으나, 대통령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3662호)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은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 법령에서 규정한 것으로, 입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동·식물인 대통령선물의 적절한 보존환경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동·식물인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동·식물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식물인 대통령 선물의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동·식물인 대통령선물 관리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의 등록정보 생산, 동·식물인 대통령선물 관리에 관한 내용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동·식물인 대통령선물을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 관련 조문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대통령선물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이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대통령

제8조(전자적 생산·관리)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기록관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에 대하여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u>기록관의 장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수탁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 제8조(전자적 생산·관리) <u>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u>----- ----- ----- ----- ----- ----- -----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의 이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관받은 동물 또는 식물 등인 대통령 선물에도 적용한다.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대통령기록물법」”이라 함)은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이라 함)

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¹⁾.

이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의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동물 또는 식물인 대통령선물 중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그런데, 상위 법령인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선물 관리원칙에 대해서만 규정하면서 대통령선물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거나 이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않아,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상 대통령선물 관리에 관한 규정은 모법의 위임을 받지 않고 규정되어

1) 「대통령기록물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제7조(생산·관리원칙) ①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대통령기록관의 장은 대통령기록물을 철저하게 수집·관리하고, 충분히 공개·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6조의3(대통령선물의 관리) 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1호의2다목의 대통령선물(이하 “대통령선물”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하여 관리해야 한다.

②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를 생산·관리하고 있는 대통령선물이 동물 또는 식물 등이어서 다른 기관에서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있음.

이에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상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상위 법령에 규정하고,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동·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어 보임.

<현행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등록정보 생산하여 관리 (대통령령)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등록정보 생산하여 관리 (법률)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동·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 가능 (대통령령)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동·식물 등인 대통령선물을 다른 기관의 장에게 이관 가능 (법률)
<u><신 설></u>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동·식물 등인 대통령 선물을 다른 기관 또는 개인에게 이관 가능하며, 필요한 <u>물품·비용 지급 가능</u>

다만, 대통령선물을 개인에게 이관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경우, 개인이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 가능 여부³⁾, 「대통령기록물법」⁴⁾에 따른 보안 및 재난대책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3) 「대통령기록물법」

제14조(무단 반출 등의 금지) 누구든지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해서는 아니 된다.

4) 「대통령기록물법」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법제적 측면에서 현행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제1항⁵⁾이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을 먼저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7조의2제1항이 아니라 제7조제1항에서 이를 약칭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대통령선물의 효율적·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현행 시행령을 법률로 상향하는 것⁶⁾과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⁷⁾.

문 의 처

02)6788-5337

제15조(보안 및 재난대책)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관할 대통령기록물의 보호 및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보안 및 재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5) 「대통령기록물법」

제7조(생산·관리원칙) ① 대통령과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의 기관의 장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6) 행정안전부는 법률에서는 대통령선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

7) 행정안전부는 그간 동·식물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에서 전문관리기관으로 이관되었으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사례는 풍산개 한쌍이 유일하며 비용지급 사례는 없다는 설명임.